

## 2023 객관식세법(이승원 · 이승철 저, 나무경영아카데미) 추록 및 정오표 - 4. 6. 현재

2023년 3월 30일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과 세법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현재 교재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사항 및 교재출간 후 발견된 수정사항 중 주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.

표현방식의 단순한 변화 등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수험목적에 고려하여 생략하였습니다.

### I.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

#### 1. 개정사항 개요

##### (1) 법인세법

통합투자세액공제율 일부 상향 조정

##### (2) 소득세법

##### ① 고위험·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

현 행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위험·고수익채권 투자신탁 분리과세 특례 ○ (적용요건)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○ (특례내용)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은 14% 세율로 분리과세 (가입 후 3년간 발생 소득에 한정) ○ (적용한도)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 ○ (적용기한) '24.12.31. 까지 가입분

##### 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확대

2023년에 한정하여 대중교통사용분공제율을 40%에서 80%로 확대함

#### 2. 교재 수정사항

Page	행	수 정 전	수 정 후
1-290	하15	※ 통합투자세액공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. 통합투자세액공제액 : A+B A. 기본공제 :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× 1% (중견기업 5% 개정, 중소기업 10%) <sup>*1</sup> 단, 2023년에 한정하여 일반기업 3%, 중견기업 7%, 중소기업 12% 적용 개정 B. 추가공제 : (당기 투자액 -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) × 3% <sup>*2</sup> 단, 2023년에 한정하여 10% 적용 개정	*1.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3%(중견기업 6% 개정, 중소기업 12%, 단, 2023년에 한정하여 일반기업 6%, 중견기업 10%, 중소기업 18% 적용 개정)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,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5%(중소기업 25%) 개정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. *2.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며,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는 추가공제율을 4%(단, 2023년에 한정하여 10% 개정)로 한다.
2-25	상21	( 추가 )	(11)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(3,000만원까지의 매입액)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개정 14%
2-26	하4	( 추가 )	①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개정 ②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
2-176	상14	아래 별도 기술	
2-186	하1	④ ₩5,250,000	④ ₩6,000,000
2-192	하11	(2) 신용카드소득공제액 : ~ = ₩5,250,000 ① 공제대상액 : ~ = ₩5,250,000 a. (₩6,000,000 + ₩3,000,000) × 40% + ~ = ₩3,900,000	(2) 신용카드소득공제액 : ~ = ₩6,000,000 ① 공제대상액 : ~ = ₩6,450,000 a. ₩6,000,000 × 40% + ₩3,000,000 × 80% + ~ = ₩5,100,000
	하2	ㄱ. (₩6,000,000 + ₩3,000,000) × 40% + ~ = ₩3,900,000	ㄱ. ₩6,000,000 × 40% + ₩3,000,000 × 80% + ~ = ₩5,100,000

※ 2-176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산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.

소득공제 = Min[1, 2]

1. 공제대상액: ① 또는 ② 또는 ③ 또는 ④

- ① 신용카드사용분이 총급여액의 25%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: a+b+c
  - a. 전통시장사용분<sup>\*1</sup>×40%+대중교통이용분<sup>\*2</sup>×40%(2023년에 한하여 80%) 개정
  - b. (도서등사용분<sup>\*3</sup>+직불카드등사용분<sup>\*4,\*6</sup>)×30%
  - c. (신용카드사용분<sup>\*5</sup>-총급여×25%)×15%
- ② 신용카드사용분이 총급여액의 25%보다 적고 신용카드사용분, 직불카드등사용분 및 도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%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: a+b
  - a. 전통시장사용분×40%+대중교통이용분×40%(2023년에 한하여 80%) 개정
  - b. (도서등사용분+직불카드등사용분+신용카드사용분-총급여×25%)×30%
- ③ 신용카드사용분, 직불카드등사용분 및 도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%보다 적고 신용카드사용분, 직불카드등사용분, 도서등사용분 및 전통시장사용분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%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: a+b
  - a. 대중교통이용분×40%(2023년에 한하여 80%) 개정
  - b. (전통시장사용분+도서등사용분+직불카드등사용분+신용카드사용분-총급여×25%)×40%
- ④ 신용카드사용분, 직불카드등사용분, 도서등사용분 및 전통시장사용분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%보다 적은 경우  
 : (대중교통이용분+전통시장사용분+도서등사용분+직불카드등사용분+신용카드사용분-총급여×25%)×40%(2023년에 한하여 80%) 개정

2. 한도: (1)+(2) 개정

- (1) 일반한도: 250만원(총급여액이 7,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)
- (2) 추가한도: Min[①, ②]
  - ① 전통시장사용분×40%+대중교통이용분×40%(2023년에 한하여 80%) 개정 + 도서등사용분×30%
  - ② 200만원(총급여액이 7,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)  
 \* 일반한도 초과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.

## II. 시행령 확정에 따른 문구 변경사항

Page	행	수 정 전	수 정 후
1-65	하6	① 세금과 공과금(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직접외국납부세액 포함)	① 세금과 공과금(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 포함)
3-143	상21	i.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(공급하는 자가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) 개정	i.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판매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
4-9	하12	* 1.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형제자매 및 태아(연로자공제 및 장애인공제는 제외) 개정 를 말한다. 이 경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.	* 1.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형제자매를 말한다.
5-6	상16	(4) 본인이 ~ 생부나 생모	(4) 본인이 ~ 생부나 생모(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)
5-12	하5	*처음 방문한 ~ 3일(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) 이상이어야 한다.	*처음 방문한 ~ 3일(공휴일 및 대체공휴일, 토요일 및 일요일 제외) 이상이어야 한다.
5-75	하3	~ 다만, 전세권 등 설정일 중 가장 빠른 것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보유자의 국세 체납액 합계액의 범위에서는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.	~ 다만, 직전 보유자 보유기간 중의 전세권 등 설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보유자의 국세 체납액 합계액의 범위(직전 보유자가 해당 재산을 보유하기 전에 해당 재산에 전세권등이 있는 경우에는 0원)에서는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한다.

7-11	상16	<p>a. 해당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 및 확인서 <b>개정</b> 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</p> <p>b. 해당 내국법인이 폐업한 경우(사실상 폐업한 경우 포함)</p> <p>c.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·경정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</p>	<p>a. 해당 내국법인이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</p> <p>b. ~ c. 생략</p> <p>d. 내국법인이 해당 금액을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않고 반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분하거나 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<b>개정</b></p> <p>* 임시유보 처분을 배제하고 과세당국이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·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 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배당은 내국법인이 처분을 한 경우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날 <b>개정</b> 에, 과세당국이 처분을 한 경우는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.</p>
------	-----	--	--

### III. 교재 수정사항(3월 14일에 공포된 지방세법 개정 사항 포함)

Page	행	수 정 전	수 정 후
1-54	상13	~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~	~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~
1-308	상4	~ 제21기 과세표준은 ₩260,000,000 ~	~ 제21기 과세표준은 ₩200,000,000 ~
	상12	⑤ ₩21,554,000	⑤ ₩16,154,000
1-318	상5	<p>※ 문제 27 해답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.</p> <p>(1) 감면후세액</p> <p>① 산출세액 : ₩200,000,000×9% = ₩18,000,000</p> <p>② 감면후세액 : ₩18,000,000 - ₩1,400,000 = ₩16,600,000</p> <p>(2) 최저한세 : (₩200,000,000 + ₩20,000,000)×7% = ₩15,400,000(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음)</p> <p>(3) 외국납부세액공제액 : Min[①, ②] = ₩306,000</p> <p>① ₩400,000</p> <p>② ₩18,000,000×₩3,400,000/₩200,000,000 = ₩306,000</p> <p>(4) 차감납부할 세액 : ₩16,600,000 - ₩306,000 - ₩1,000,000×14% = ₩16,154,000</p>	
2-40	하2	③ ₩2,826,000	③ ₩6,326,000
2-47	하3	<p>② 익금불산입 : ₩7,000,000×30% = <math>\frac{(2,100,000)}{₩4,900,000}</math></p> <p>(4) 차액 : ₩7,726,000 - ₩4,900,000 = ₩2,826,000</p>	<p>② 익금불산입 : ₩7,000,000×80% = <math>\frac{(5,600,000)}{₩1,400,000}</math></p> <p>(4) 차액 : ₩7,726,000 - ₩1,400,000 = ₩6,326,000</p>
2-138	상5	*1. 월정액 급여 : ~ +₩125,000 = ₩825,000	*1. 월정액 급여 : ~ +₩225,000 = ₩925,000
2-222	상2	~ 옳은 것은?	~ 옳은 것은? 단, 세액공제액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.
7-12	상1	② 4개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득처분을 한 경우에 납세자가 이전소득금액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전소득금액통지는 없었던 것으로 본다.	② 임시유보 처분을 배제하고 과세당국이 처분이나 조정을 한 경우에 납세자가 이전소득금액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처분이나 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.
7-12	하14	* ~ 제출기한이 만료된 날(4월 이내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득처분을 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일)부터 15일 이내에 ~	* ~ 제출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~
7-84	상12	①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별장, 골프장, 고급주택 ~	①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골프장, 고급주택 ~ <b>개정</b>
7-86	하14	2.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~ 현재는 60%이다.	2. 주택에 대한 적용비율은 ~ 현재는 60%이다. 단, 1세대 1주택의 적용비율은 30%~70%이며 현재는 45%이다. <b>개정</b>
7-86	하7	0.1%(6천만원 이하)~0.4%(3억원 초과), 4%(별장)	0.1%(6천만원 이하)~0.4%(3억원 초과) <b>개정</b>
7-86	하6	*시가표준액 6억원 이하인 ~	*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인 ~